

「공직선거법」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?



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입니다.

※ 구호·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규정

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?



국회의원·지방의원·지방자치단체장(교육감 포함)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·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.

※ 기부행위의 약속·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도 금지

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?



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됩니다.

※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은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·청산합니다.

기부를 받으면?

선거에 관하여 금전, 물품, 관광,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(주례는 200만원)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.

※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



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· 금지됩니다



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